

[별표 12]<신설 1984.11.16>

불량품의 소각·매몰의 기준 및 사료등으로의 활용을 위한 검사기준

1. 소각 및 매몰기준

가. 소각기준

구 분	소 각 실 시 장 소	소 각 방 법	비고
불량품소각	1.불량품을 소각하는 시설이 있는 도축장 또는 폐사체 취급장 2.가옥·수원지·하천 또는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장소로서 일상 사람 또는 가축이 접근하지 아니하는 장소	1.소각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른다. 2.땃나무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른다. 가. 연 료 해당불량품을 소각하는데 충분한 땃나무 및 보조 연료를 사용한다. 나. 불량품을 소각할 때에는 가로·세로 각 2m, 깊이 75cm의 땅을 파서 이를 바깥구덩이로 하고, 다시 그 구덩이 밑을 가로·세로 각 1m, 깊이 75cm의 안구덩이를 판다. 안구덩이 밑에 짚등을 깊이 약75cm정도로 깔고 타르등을 뿌린다음 그 위에 땃나무를 쌓고 바깥구덩이에 철봉을 놓아 불량품을 받친 후 불을 붙여 완전히 소각한다.	

나. 매몰기준

구 분	매 몰 실 시 장 소	매 몰 방 법	적 요
불량품매몰	1.불량품을 매몰하는 시설을 가진 도축장 또는 폐사체 취급장 2.가옥·수원지·하천 또는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장소로서 일상사람 또는 가축이 접근하지 아니하는 장소	1.매몰 구덩이는 불량품을 넣어도 지표까지 1m이상 남도록 깊게 판다. 2.불량품 위에는 생석회를 뿌린 후 흙을 덮는다. 다만, 토질이 모래등으로 되어있어 파지기 쉬운 곳에서는 석회등으로 불량품을 덮은 후 흙으로 덮는다.	매몰한 장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표시한다. 1.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2. 기타 필요한 사항

2. 사료이용을 위한 검사기준

검사원이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가. 작업장외에서 도살 해체한 지육의 검사

- (1)지육의 청결상태
- (2)방혈상태
- (3)도살후 경과시간추정(하절기등 계절별)
- (4)지육의 보관상태 및 온도
- (5)밀도살 지역의 전염병 발생유무
- (6)실험실검사 필요성 유무판단